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특허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산업재산창출전략팀, 산업재산통상협력팀 및 기계전자상표심사팀 등 13개 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8일까지에서 2023년 9월 8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

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“2022년 9월 8일”을 “2023년 9월 8일”로 한다.

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9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“2022년 9월 8일”을 “2023년 9월 8일”로 한다.

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2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“2022년 9월 8일”을 “2023년 9월 8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	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활용·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통상협력팀, 기계전자 상표심사팀, 국제 상표심사팀, 산업디자인심사팀, 계측기술심사팀, 국제특허출원 심사1팀, 자율주행심사팀, 재료 금속심사팀, 스마트제조심사팀 및 방송미디어심사팀은 <u>2022년 9월 8일까지</u> 존속한다.	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3년 9월 8일</u>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9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	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9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	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

구의 존속기한)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활용·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및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은 <u>2022년 9월 8일까지</u> 존속한다. ② (생략)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2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환경기술심사팀은 <u>2022년 9월 8일까지</u> 존속한다. ② (생략)	구의 존속기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2 <u>023년 9월 8일</u>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2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3년 9월 8일</u>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